

#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일부 개정 입안예고

2008. 11.

식품의약품안전청

####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-259호

식품등의 표시기준(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-66호, 2008.10. 8)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,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8년 1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

##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# 1. 개정 이유

소비자가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·포장에 "소비자 불만 등 신고는 국번없이 1399"의 표시를 의무화 하고, 복합원재료를 사용 한 제품에 개별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 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선택 보 장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 내용

#### 가. 복합원재료 표시방법 개선[안 별지1 제1호가목7)가)(2)]

- (1) 원재료명을 표시함에 있어 혼합양념(다대기) 등의 경우 복합 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원재료로 풀어서 표시할 수 있 어 이를 실제 사용한 원료를 표시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할 필요
- (2) 복합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복합원재료 명칭과 괄호로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함
- (3)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기대
- 나. 소비자 불만 등 신고번호 표시의무화[안 별지1 제1호가목1 0)차) 신설]
  - (1)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 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·포장에 "소비자 불만 등 신고는 국번없이 1399"의 표시를 하도록 함
  - (2) 부정·불량식품의 신속신고를 유도하여 신속대응으로 소비자 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에 기대

#### 3. 의견제출

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 약품안전청장(우편번호: 122-704, 주소: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, 참조: 식품안전정책과 전화 02-380-1726~7, 팩스 02-388-6396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 · 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다. 기타 참고사항

####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-259호

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(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-66호, 2008.10. 8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08년 1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

####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1 제1호가목7) 중 가)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목 7)다) 중 (1)을 삭제하며, 같은 목 10)에 차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) 식품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.
  - (1) 식품의 제조·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(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7조에 따른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서 정한 주원료의 원료명을 우선 표기할 수 있으며, 중량비율로서 2%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다.
  - (2)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복합원재료에 포함

된 식품첨가물이 해당 제품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에는 그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.

차)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 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·포장에 "소비자 불만 등 신고는 국번없이 1399"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·가공·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등과 동일한 식품등은 2010년 7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. 이 경우 수입하였던 식품에는 수입을 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#### 혂행 개정안 [별지1] [별지1]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(제9조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(제9조 관련) 관련) 1. 식품등의 일반기준 1.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. 식품(수입식품을 포함한다) 가. 식품(수입식품을 포함한다) 1) ~ 6) (생략) 1) ~ 6) (현행과 같음) 7) 워재료명 및 함량 7) 워재료명 및 함량 가) 식품의 제조·가공시 사용 가) 식품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한 모든 원재료명(최종제품 같이 하여야 한다. (1) 식품의 제조·가공시 사용 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 한다. 이와 같다)을 많이 사 한 모든 원재료명(최종제품 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 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 야 한다. 다만, 법 제7조에 외한다. 이하 같다)을 많이

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

서 정한 주원료의 원료명을

우선 표기할 수 있으며, 중량

비율로서 2% 미만인 경우에

는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

하고 표시할 수 있다.

-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 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7조 에 따른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, 에서 정한 주원료의 원료명을 우선 표기할 수 있으며, 중량비율로서 2%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 순서 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다.
- (2)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

나) (생략)

- 다)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)와 나)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.
- (1)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당 제품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에는 그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.
- (2) ~ (11) (생 략)

에는 그 복합원재료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 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당 제품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에는 그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 여야 한다.

나)	(현행과 같음	<del>을</del> )	
다)			
, .			

<삭 제>

(2) ~ (11) (현행과 같음)

라) ~ 바) (생 략) 8)·9) (생 략)

10) 기타 표시사항 가) ~ 자) (생 략) <신 설>

- 라) ~ 바) (현행과 같음) 8)·9) (현행과 같음)
- 10) 기타 표시사항가) ~ 자) (현행과 같음)
- 차)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 피해가 있는 경우 신 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 해 식품의 용기·포장에 "소 비자 불만 신고는 국번없이 1399"의 표시를 하여야 한 다.